

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2년 6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22년 6월 3일

3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('22. 1. 13. 시행)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변경
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 및 제6조)

- “지방자치법 제15조제6항” → “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”

- 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” → 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”

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단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